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전문공보관 박세현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도자료

2020. 1. 29.(수)

제 목

울산광역시장 송철호 등 불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※ 위 양식에 따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공개의 요건과 범위 기재(제15조 제4항)

※ 해당 부분에 표기, 해당사항 없는 부분()은 내용 삭제

□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2020. 1. 29.(수) 現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□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(송철호, 現 울산광역시장) 공직선거법위반
2. (B, 前 울산광역시 OO부시장) 공직선거법위반, 위계공무집행방해
3. (황운하, 前 울산지방경찰청장, 치안감) 공직선거법위반,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
4. (백원우, 前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) 공직선거법위반
5. (박형철, 前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) 공직선거법위반
6. (한병도, 前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) 공직선거법위반
7. (G, 前 대통령비서실 OO비서관실 선임행정관) 공직선거법위반
8. (H, 現 국무총리실 OO비서관실 사무관) 공직선거법위반
9. (I, 現 울산광역시장 OO보좌관) 위계공무집행방해
10. (J, 現 울산광역시 OO본부 OO소장) 공직선거법위반, 공무상비밀 누설, 위계공무집행방해
11. (K, 現 울산광역시 OO과 서기관) 공직선거법위반
12. (L, 現 울산광역시 OO과 사무관) 공직선거법위반
13. (M, 現 OO구청 OO과장) 공직선거법위반

□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경찰 하명수사 관련 : 송철호, B, 황운하, 백원우, 박형철, H
 - 송철호는 2017. 9. 황운하에게 울산광역시장 甲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,
 - B는 2017. 10. H에게 '甲에 대한 비위정보'를 제공하고,
 - H는 B가 제공한 비위정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고,

- 백원우는 2017. 11. ~ 12. 박형철을 통해 위 범죄첩보서를 경찰청,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 하달하고,
- 황운하는 2017. 10. 甲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甲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위반

2. 공공병원 등 공약 : 송철호, B, G

- 송철호, B는 '공공병원 유치'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2017. 10. G에게 '산재母병원'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하고,
- G는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 제공 및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위반

3. 후보자 매수 등 : 한병도

- 2018. 2. 乙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고 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, 사퇴 목적 공직제공 의사표시를 하여 공직선거법위반

4. 울산광역시청 자료유출 : B, J, K, L, M

- 2017. 8. ~ 2018. 4. 울산시청 자료 등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이메일, 우편 등으로 B에게 발송하여 송철호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후보 TV 토론자료 등으로 활용케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위반

5. 울산광역시청 OO특보 채용비리 : B, I, J

- 2018. 7. 울산광역시청 OO특보 공개경쟁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하여 위계로 채용담당 공무원 등의 공무집행방해

나머지 관련자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임 ☒